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권영세·이인선·주호영

구자근 · 김정재 · 김상훈

권영진 · 조경태 · 강대식

서일준 · 김기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제24조제1항제3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미수범까지도 처벌함(제25조).

그러나 동 규정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2023. 9. 26.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을 함에따라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음.

한편, 헌법재판소가 '전단등 살포'에 관한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심판대상조항을 '전단등 살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며, 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게시물 게시 부분'에 대하여 합헌의 결정을한 것은 아닌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게시물 게시 부분'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안 제4조,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25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4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u><삭 제></u>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	
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	<u><삭 제></u>
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	
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	
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u>을 말한다.</u>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u><</u> 삭 제>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	
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	
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u><삭 제></u>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 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 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 서는 아니 된다.

-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 에 대한 확성기 방송
-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 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삭 제>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

<삭 제>

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 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